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270
----------	------

제출연월일: 2018. 10.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연구원의 경비 충당을 위한 출연금을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음.

나. 이에 2019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개요

- 대상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나. 2019년 출연금 산출내역

- 출 연 금: 12,798천 원
- 산출내역: 2017년 보통세 세입결산액(85,320,566천 원)×0.015%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다. 연도별 출연금 출연현황

(단위: 천 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9,931	10,108	10,473	11,160	11,799

3. 참고사항

- 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라.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 10. 25.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9. 21.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2018. 9. 27.

다. 상정일자: 2018. 10. 23.

(제241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기획재정국장

나. 제안이유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원의 경비 충당을 위한 출연금을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음.
- 이에, 2019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개요

- 대상기관: 한국지방세 연구원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나. 2019년 출연금 산출내역

- 출 연 금: 12,798천원
- 산출내역: 2017년 보통세 세입결산액(85,320,566천원)×0.015%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다. 연도별 출연금 출연현황

(단위: 천 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9,931	10,108	10,473	11,160	11,799

4. 참고사항

- 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라.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해 2011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법정 출연금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을 준수한 타당한 안으로 여겨짐.

6. 질의 및 답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